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28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026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클럽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7.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00,480,000원[1], 농어촌특별세 55,044,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취득세 600,400,000원'은 '취득세 600,480,000원'의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28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redacted]클럽 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redacted]클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redacted]클럽(이하 '[redacted]라 한다)의 골프회원권 150구좌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01. 6. 12. 원고에게 과세표준 25,020,000,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600,48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농어촌특별세 55,044,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redacted]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었다가 피고 등이 압류를 함에 따라 공탁된 금원 중 822,564,480원을 2009.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 이 사건 취득세 중 317,811,480원, 취득세 가산금 462,369,6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42,383,400원을 징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가 발행한 별지 2 회원권 목록 순번 4 내지 20 기재 골프장회원권에 기하여 유효하게 회원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회원권을 승계받은 자 역시 회원권지위를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등 사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가 무효인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경 피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취득세는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서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는 어떠한 결정을 받은바 없어 경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신고와 감액수정신고를 모두 포함한 수정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 이후에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신고만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45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했지만, 구 지방세법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제도는 수정신고의 사유가 법정의 후발적 사유만으로 한정되는데다가 증액은 물론 감액신고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28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제도와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방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 외에 다시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이 경정청구제도를 두지 않고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수정신고제도만을 두고 있었고,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규정도 준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서 명문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거의 동일한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2, 3조는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들은 위 법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취득세 신고납부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을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취득세는 원고가 피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 있기 전 [redacted]의 골프회원권 150구좌를 취득한 행위에 대한 것인바,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권이 인정되거나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취득세는 2011. 1. 1. 이후 최초로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는 2011. 1. 1. 시행된 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28

이상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국세인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에서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인형준

판사 정혜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28

(별지1)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 (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28

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208. 2. 29. 대통령령 제2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7-28

(별지2)

회원권 목록

순번	회원권번호	매수	한국골프장협회 날인일	비고
1차 발행분				
1	G04-12-001 부터 G04-12-0010 까지	10	1992. 8. 6.	0003-0004 (푸른상호저축은행)
2	G04-12-0012 부터 G04-12-0036 까지	25	1992. 8. 6.	0019-0026 (푸른상호저축은행) 0029-0030 (성원창업투자)
3	G04-12-0039 부터 G04-12-0050 까지	12	1992. 8. 6.	
4	G04-12-0051 부터 G04-12-0054 까지	4	1997. 2. 12. 재발행	
5	G04-12-0231 부터 G04-12-0240 까지	10	1997. 4. 3. 재발행	0235, 0237 (오티스엘리베이터)
6	G04-12-0242	1	1997. 4. 29. 재발행	
7	G04-12-0243 부터 G04-12-0246 까지	4	1997. 6. 20. 재발행	
	(소계)	(66)		
2차 발행분				
8	G04-12-0057 부터 G04-12-0062 까지	6	1996. 5. 25.	
9	G04-12-0065부터 G04-12-0076 까지	12	1996. 5. 25.	
10	G04-12-0078 부터 G04-12-0080 까지	3	1996. 5. 25.	
11	G04-12-0082 부터 G04-12-0101 까지	20	1996. 5. 25.	
12	G04-12-0241	1	1997. 4. 10. 재발행	
	(소계)	(42)		
3차 발행분				
13	G04-12-0107 부터 G04-12-0126 까지	20	1996. 6. 3.	
14	G04-12-0127 부터 G4-12-0128 까지	2	1996. 6. 26.	
15	G04-12-0132 부터 G04-12-0135 까지	4	1996. 6. 26.	
16	G04-12-0137 부터 G04-12-0176 까지	40	1996. 6. 26.	0157-0176 (진흥상호저축은행)
	(소계)	(66)		
4차 발행분				
17	G04-12-0185 부터 G04-12-0192 까지	8	1996. 12. 27.	
18	G04-12-0194	1	1997. 1. 9.	
19	G04-12-0222	1	1997. 1. 25.	
20	G04-12-0230	1	1997. 1. 25.	
	(소계)	(11)		
	총계	185		